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60
----------	-------

발의연월일 : 2026. 8. 12.

발 의 자 : 한병도 · 윤준병 · 朴芝源
윤종균 · 김교홍 · 이춘석
박상혁 · 양부남 · 진선미
전용기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새만금사업지역은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며 미래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음. 이러한 기업 투자를 조속히 현실화 하고, 추가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임.

또한,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입주기업 및 종사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함. 이를 위해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택공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원회 심의 사항 및 사업시행자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새만금청장에게 경관계획 수립·심의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적기에 조성함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의 조속한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사유 추가(안 제8조의2)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계획·실시계획·통합계획의 승인을 최초로 신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통합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실시계획·통합계획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사업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등의 사유로 추가함.

나. 통합계획 승인 시 위원회 심의사항 개정(안 제11조의2)

‘통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를 새만금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명확히 함.

다. 새만금위원회 심의사항 구체화(안 제33조)

새만금위원회 심의사항 중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구체화함.

라. 공공시설 무상 양여 특례 신설(안 제44조의2 신설)

새만금청이 설치한 기반시설을 향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마. 산업단지 관리 권한 확대(안 제52조의2)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지역 내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입주기업체·지원기관에 대하여 보고 요구, 자료 제출 명령 및 업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바.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52조의5 신설, 제59조 삭제)

새만금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외국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조항(제59조)은 삭제하여 제52조의5에서 통합적으로 규율되도록 함.

사. 경관계획 특례 신설(안 제69조의3 신설)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새만금청장이 「경관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경관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를 갈음하여 새만금청에 새만금사업지역 경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또한 「경관법」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아. 새만금청장의 사무 범위 조정(안 제70조)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제21호)를 새만금청장이 수행하는 사무에서 삭제함.

자.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운영 근거 마련(안 제72조)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새만금청장이 수행하는 주택건설사업 관련 사무의 범위에 「주택법」 제18조를 추가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따라 실시계획”을 “따른 실시계획 또는 제11조의2에 따른 통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개발계획,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 또는 제11조의2에 따른 통합계획의 승인을 최초로 신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만,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의2.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 또는 제11조의2에 따른 통합계획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11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새만금청장이 통합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통합계획”을 “통합계획”으로 한다.

④ 새만금청장이 통합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통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업무의 위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의 친환경적 개발 및 생태복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용도에서 시행된 사업의 운영·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재산의 처분 등) ①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5조제16호에 따라 새만금청이 조성·취득한 기반시설은 「국유재산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기반시설의 종류, 사업 유형,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각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이 제35조제16호에 따라 조성·취득한 기반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물품은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 입주기업체 · 지원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보고 및 검사 등과 관련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5(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제59조를 삭제한다.

제69조의2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새만금개발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

를」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내에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제6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3(경관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경관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경관법」 제12조 및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를 갈음하여 새만금청에 새만금사업지역 경관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경관법」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제70조제1항제21호를 삭제한다.

제72조 중 “제15조·제1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49조·제54

조·제57조·제59조·제94조”를 “제15조·제18조·제1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49조·제54조·제57조·제59조·제94조”로 한다.

제7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공원 설치 등의 권한의 유효기간) 제70조제1항제8호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새만금청장이 수행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에 관한 규정은 해당 지역이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지기 전까지만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개발계획 등의 승인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개발계획, 실시계획 또는 통합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①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이 법에 따른 승인의 취소, 그 밖에 관련되는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①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의2.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개발계획,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 또는 제11조의2에 따른 통합계획의 승인을 최초로 신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만,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4.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1년 이	4. ----- 따른 실시계획 또는 제11조의2에 따른 통합계획--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생략) <u><신설></u> 6. ~ 8. (생략) ② ~ ⑤ (생략) 제11조의2(용도별 통합개발계획 의 승인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④ <u>새만금청장이 통합계획을 승 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 금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 며, 통합계획 중 「환경영향평 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략</u>	----- -- 5. (현행과 같음) <u>5의2.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 또는 제11조의2에 따른 통합 계획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u> 6.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용도별 통합개발계획 의 승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새만금청장이 통합계획을 승 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 금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 다. 통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u> <u>⑤ 통합계획</u> ----- ----- ----- ----- ----- -----
---	--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다.

<신 설>

제33조(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② 새만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4.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

5. ~ 14. (생략)

③ ~ ⑧ (생략)

<신 설>

-----.

제32조의2(업무의 위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의 친환경적 개발 및 생태복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용도에서 시행된 사업의 운영·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

5. ~ 14.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재산의 처분 등) ①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5조제16호에 따라 새만금청이 조성·취득한 기반시설은 「국유재산법」 제27조에도

제52조의2(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신 설>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전북
특별자치도교육청에 매각하거
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다
만,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기반
시설의 종류, 사업 유형, 부담능
력 등을 고려하여 매각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이 제35조제16호에
따라 조성·취득한 기반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물품은 「물품관리법」에도 불
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전북특
별자치도교육청에 무상으로 양
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재
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
다.

제52조의2(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은 새
만금사업지역 내의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입주기업체·지원기
관에 대하여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
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

② (생략)

<신설>

제59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

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보고 및 검사 등과 관련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2조의5(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삭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동포를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69조의2(스마트도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략)

<신설>

<신설>

⑤ (생략)

제69조의2(스마트도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새만금개발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내에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70조(도시·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

제69조의3(경관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경관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경관법」 제12조 및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를 갈음하여 새만금청에 새만금사업지역 경관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경관법」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제70조(도시·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① -----

<u>조</u> 및 제96조를 적용할 때에 시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새만금청장이 수행한다. 제7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④ (생략) <u><신설></u>	· 제94조 ----- ----- ----- -----. 제7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	---